

학생증 발급규정

제정 2016년 08월 19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 재학생의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발급)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교학처에 학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제3조(재발급) 학생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, 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휴대) 학생은 교내·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본 대학교 교직원의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에게 수강, 시험 및 도서관 출입 등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무효 및 반납) ① 학생증은 졸업, 퇴학 및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② 전 항에 의하여 무효화된 학생증은 이를 교학처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용기간) 학생증은 입학과 동시에 발급하여 이를 졸업 때까지 사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